

누수 보수비용 산정방법(제91조제2항 관련)

| 구 분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수범위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방수공사<br>부위  | 누수<br>하자<br>면적<br>인정<br>범위   | 탄성(내균열성)이<br>없거나 부족한<br>방수재료 | <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인 경우><br>- 결함부위 사방으로 50cm를 더한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탄성(내균열성)이 있는<br>방수재료         | <멤브레인(Membrane Waterproofing) 방수인 경우><br>- 결함부위 사방으로 30cm를 더한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보수<br>범위<br>산정<br>기준         | 부분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| - 누수하자면적이 해당 면 전체면적의 30% 미만일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체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| - 누수하자면적이 해당 면 전체면적의 30% 이상일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비방수<br>공사부위 | 배관누수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부분교체: 배관 누수발생부위를 부분적으로 교체 가능한 경우<br>- 부분보수: 누수로 피해로 인한 마감재 보수면적을 산정할 때의 피해 발생부위<br>- 전체보수: 보수 범위가 광범위하여 피해발생 면의 전체에 20%를 초과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균열누수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구조체 누수 하자의 보수 범위는 균열 보수 범위에 준함<br>- 비관통 균열에 의한 누수인 경우 충전공법을 적용하고, 관통균열에 의한 누수인 경우는 주입식 공법을 적용<br>- 도장마감의 보수 범위는 균열 하자 보수의 경우와 동일하게 균열 주위 30cm에 대하여 보수면적을 산정하고, 그 면적이 전체면적의 20%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 전체도장 실시 |
| 창호<br>부위    | 창호 자체의 수밀성과<br>배수성 부족의 경우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부분교체: 창호의 결함부품을 부분적으로 교체 가능한 경우<br>- 전체교체: 부분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. 이 경우 관련된 마감 부위도 보수대상에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창호 둘레 실링(=코킹)<br>'재료 결함'의 경우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창호 둘레 4면 전체를 재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창호 둘레 실링(=코킹)<br>'시공 결함'의 경우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부분보수: 창호 둘레 4면 중 결함면 전체만 재시공 보수하는 것을 원칙<br>- 전체보수: 부분 보수로는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둘레 4면 전체를 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보수공사로 주변<br>마감에 영향을 줄 경우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관련 부위에 대한 마감 재시공(필요시 제거 후 재시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공통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도장마감의 보수 범위는 하자로 오염된 마감면적(하자면적)이 전체면적의 20%를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균열 보수의 경우와 동일하게 전체도장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